

「2026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2. 1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적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자발적참여업체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으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추진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7항(재정 지원 등)

2. 신청 자격

- **소부분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자발적참여업체***** (자발적참여업체 및 중소기업 우선지원)

○ '26년도 이행대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26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자발적 참여업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자발적참여업체

3.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 ~ '26년 12월
- 지원 예산 : 총 1,500백만원
- 지원 한도 : 예산 범위 내,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지원 설비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에 한함
 -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 지원 사업 절차



4. 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2. 11. ~ 2026. 3. 13, 16: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신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신청
 - ※ 본 지원사업의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 ⑥ 공모명(2026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신청 내역 작성 및 제출서류(운영 지침 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제출서류)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작성 시 첨부 대상 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목록 일체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신청기간 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설비군 별로 작성하여 제출

- 동일한 신청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에서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되고, 신청 사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설비를 다량 신청하는 경우, 설비별로 사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견적서 (단일 견적) 또는 설비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자 확인서 등)를 제출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 가격으로 제출(관련증빙 첨부)

○ (지원 제외)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 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 (서류 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감축량 산정방법 적절성, 사후관리 적절성 등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5. 지원업체 선정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업무처리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기타(기업규모)(10점), 가점*(13점), 감점**(△23점)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 가점 항목: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여부, 저GWP 물질 사용설비 도입, 저탄소 제품 도입

** 감점 항목: (기 지원업체)감축량 미달성(준공, 사후관리),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미달성, 사업비 이월, 기타 준수사항 위반 업체,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필요시 현장 PT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유의사항

- (지원 한도) 예산 한도 및 지원 대상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유의사항

-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지원업체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입찰·계약 준수사항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전 [별지 제32호서식] 입찰·계약 자가점검표를 입찰 건별로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서) 지원업체는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후 원가 계산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지원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법령 등 준수

-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사업 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 기업에게 있음

□ 감축설비 설치 관련

- (계약 체결)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치 완료보고) 지원업체는 설비를 설치하고 예상감축량에 대한 시운전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별지 제19호서식] 지원설비 설치완료서 제출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준공금) 수령

□ 사후관리

- (감축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지원 설비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설비 처분제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

※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업체 지정 제외 사유 발생 시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 기타 사항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7. 문의처

- 사업문의 : 사업신청, 사업선정 및 운영관리 안내
 - 한국환경공단 ETS정책지원부 보조사업 담당자 ☎ 032-590-5681, 5687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 별첨 1. 지원사업 세부 절차 1부.
2. 지원 감축설비 목록 1부.
3.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1부.
4. 지원업체 계약 기준 1부. 끝.

[별첨1] 지원사업 세부 절차 [운영지침 상의 주요 절차 요약]

□ 지원사업 신청

-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 및 [별지 제4호서식]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아래 첨부서류 포함)를 e나라도움 사업신청 시 파일첨부하여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

구분	No.	첨부서류
공통 서류	1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7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신청 설비 관련 서류	8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2부 이상)
	9	신규설비의 주요구성 및 사양서
	10	해당 설비일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필요 시)
	11	기존설비의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자료
	12	기존설비 운전실적 데이터(열 및 전력사용량 등)
	1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근거 데이터(excel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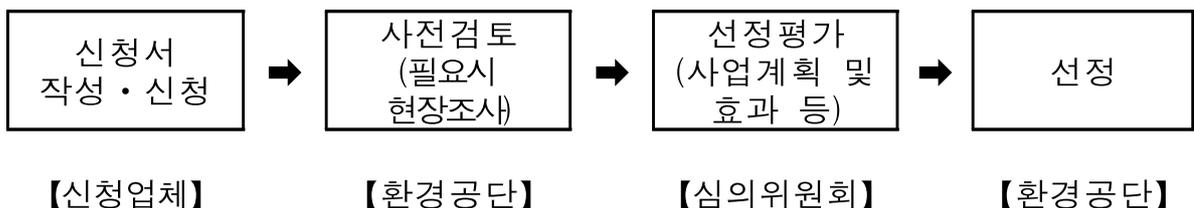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환경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보완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지원업체 선정

- 선정평가 체계



- (평가기준)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기타(10점), 가점(13점), 감점(△23점) 항목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지원업체를 선정

□ 보조금 교부 결정

- 환경공단은 지원업체 선정평가 후 선정결과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지원업체에 통지함
- 환경공단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 지원업체의 설비 투자비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일부를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업체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입찰·계약 준수사항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전 [별지 제32호서식] 입찰·계약 자가점검표를 입찰 건별로 작성하여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업체는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후 원가계산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지원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환경공단은 지원업체가 제출한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원가계산서 등을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여 협약을 체결함.

□ 착수신고

- 지원업체는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 착수신고서를 환경공단에 제출
- 지원업체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 보조금(선급금) 신청 및 지급

- 착수신고서 제출 후, 지원업체는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 신청 가능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등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 법령,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 지원업체는 선급금 수령을 위해 [별지 제15호서식]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하 'e나라도움'이라 함)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선급금 신청 시)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업체는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사업 수행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e나라도움에서 작성하여 환경공단에 제출

□ 상황보고

- 환경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상황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에 제출

□ 계획 변경 등의 승인

- 지원업체는 다음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설비내역, 설치소재지, 공사/물품/용역/감리업체, 사업기간, 설비투자비 및 보조금 등) 변경
 - 지원대상 경비의 비목별 배분 금액을 30% 이상 변경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 예상감축량 등 기타사항의 변경

□ 감축설비 설치완료 후 보조금(준공금) 신청 및 지급

-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까지 감축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
- 지원업체는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준공금 신청 시) : 선급금 신청 절차와 동일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환경공단은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비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 기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업체는 보조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과 자부담분을 사업수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e나라도움에서 작성하여 환경공단에 제출

□ 사업비 정산

- 지원업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준공금 지급시), 폐지를 승인한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으로 제출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7호)'의 [별표1]에 따라 비목·세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지원업체는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검증보고서를 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후관리

- 지원업체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별지 제21호서식] 취득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 1부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시 환경공단에 제출
- 지원업체는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별지 제23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지원업체는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시 온실가스 감축량이 사업 신청 시 계획했던 예상 감축량에 비해 낮은 경우 감축효과 미달성 사유 및 개선 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차년도 감축실적 보고서에 그 결과를 수록해야 함

※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업체 지정 제외 사유 발생 시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별첨2]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예시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예시 보일러, 버너, 로, 건조설비 등
	⑥ 물질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⑦ 불소가스 저감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⑧ 기타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예시 부생가스 회수 설비 등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⑨~⑪로 지원
	전력·연료절감설비	⑨ 인버터
⑩ 인버터 제어형압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⑪ 고효율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시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⑫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 설비 또는 열 생산 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실적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별첨3]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구분	○ 신청업체(사업장)명:						
	○ 신청 설비: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낮음	낮음	
사업 계획 (40)	① 사업계획 타당성(7)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7	6	5	4	3	
	② 설치 설비의 적합성(8) - 신청 설비 도입의 타당성	8	7	6	5	4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10) - 감축량 측정계획, 계측기기 적정운용 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계획	10	9	8	7	6	
	④ 감축량 산출근거 타당성(15) -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 실제 계측값 활용 여부, 실제 가동률 적용 여부	15	13	11	9	7	
사업 효과 (50)	⑤ 감축효과 = 감축량(tCO ₂ e/yr) ÷ 설비투자비(억원)	감축률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10% 미만
		감축효과	290 이상	50	48	46	44
	⑥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 - (사업 후 배출량)} ÷ (사업 전 배출량) × 100 * 배출량 단위: tCO ₂ e/yr	230 이상	46	44	42	40	38
		170 이상	42	40	38	36	34
		110 이상	38	36	34	32	30
		50 이상	34	32	30	28	26
50 미만	30	28	26	24	22		
기타 (10)	⑦ 기업규모별 점수	중소기업, 자발적참여업체			중견기업		
		10			7		
가점 (13)	① 탄소중립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 여부 -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대상 업체	완료	진행중		해당없음		
		5	3		-		
	②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 별 사용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해당없음		
		5		-			
	③ 저탄소 제품 도입 여부		3		-		
감점 (△23)	① (기 지원업체) 감축량 달성 여부	- (준공) 사업계획 대비 감축량이 95 % 미만인 업체	해당없음		해당		
		- (사후관리) 감축실적 보고 시, 감축량이 계획 대비 95 % 미만인 업체	-		△3		
	② (기 지원업체) 이행실적평가 달성 여부	-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목표 관리제도 이행실적 평가 미달성	달성		미달성		
			-		△12		
	③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에 실집행률 70 % 미만으로 사업비를 이월한 경우	해당없음		해당		
		-		△2			
④ 입찰·계약 관련 등 이 지침의 중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	해당없음		해당			
		-		△3			
⑤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	-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 이내	해당없음		해당			
		-		△3			

[별첨4] 지원업체 계약 기준

-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구 분		자체조달*	중앙조달**
물품, 용역	○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기 타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X

* 자체조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다만,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공사는 ‘고난도 공종 및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조달청에서의 검토 등이 어려워 자체조달 방식으로 계약 가능(사업별로 입찰 시 조달청 확인 필요)

-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